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32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13일, 이영실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영실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량 배출, 다양한 품목 및 다른 처리 방법 등 특성이 있어, 자치구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이 자치구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

- 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책무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시장이 구청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¹⁾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폐페인트, 폐의약품 및 수은 함유 폐기물 등²⁾이 있고, 이에 대한 처리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으나,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다양한 처리 특성 및 방법 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³⁾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023년 11월 말 기준, 은평구 등 17개 자치구만이 추진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자치구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1)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3)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이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시행·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로 한다.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p> <p>③ (생 략)</p> <p><신 설></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별표5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